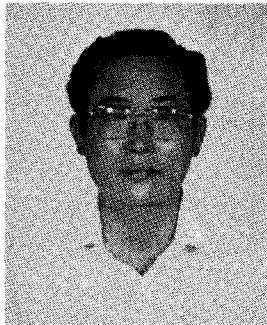


改正 特許法의 主要內容



俞 東 浩
<特許廳 事務官>

I. 머리말

작금의 國際社會는 가히 貿易戰爭의 時代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貿易戰爭의 涼中에서 우리企業이生存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技術開發을 통한 商品의 高級化와 技術先進化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國際競爭力を 갖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에 놓지않게 중요한 것은 開發된 技術을 어떻게 効果的으로 保護할 수 있느냐 하는 點에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產業財產權分野는 國民經濟的 國家產業의 側面에서 매우 重要한 分野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產業財產權分野는 國際通商의 重要한 問題로 다루어 지고 있을 뿐아니라 國內의 으로도 一般國民의 認識이 提高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특히 產業技術의 發展과 情報化의 促進은 傳統的 知的財產權外에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칩, Data Base, 衡量通信, Cable TV, 營業祕密, 生命工學에 대한 發明 등의 新知的財產權分野에 까지 그 保護의 要求가 새로운 問題로 登場되고 있으며, 產業財產權의 効果的인 國際的保護를 위하여 特許法과 商標法의 世界的인 統一化를 WIPO에서 推進하고 있으며, 그中 統一特許法은 그 結實을 눈앞에 두고있는 實情에 있다.

이러한 國內外의 要件下에서 產業財產權制度의 國際化추세에 副應하고, 開發技術의 効果的인 保護를 위하여 關係法令의 整備가 必要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88년 4月부터 1年6月여간 100여명의 많은 廳內·外의 專門家가 參與하여 特許法을 改正하였고, 이제 그 施行(90. 9. 1)단계에 있다.

II. 改正背景 및 方向

舊特許法은 日本特許法을 根幹으로 하여 美軍政法令 第91號로 特許法이 制定公布된 以來 1次에 걸친 改正과 1961年 新規制定形式으로 우리政府에 의하여 制定된 이래 7次에 걸친 改正이 있었으나, 이는 必要한 事項에 대하여 部分的인 改正에만 그치게 되어 오늘의 實情에서 살펴볼때는 國際化추세에 副應하고 國際社會에서 運用되는데 손색이 없는 法令으로서는 그 體制가 未洽할 뿐아니라 不合理하고 矛盾된 條文이나 內容이 곳곳에 散在되어 있다.

또한 國際의 으로는 技術의 發展과 經濟交流의 擴大로 產業財產權 保護制度의 強化와 國際化가 推進되고 있으며, 國內의 으로도 技術開發의 推進과 貿易規模의 擴大로 產業財產權의 保護強化와 國際化추세에 副應할 必要性이 증대

됨에 따라 特許法 등의 改正이 時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特許法의 改正方向은
첫째, 特許保護對象의 擴大
둘째, 產業財產權制度의 國際化推進
셋째, 發明者 및 權利者の 權益保護強化
넷째, 一部不合理하거나 未備된 點을 改善補完

다섯째, 法의 體制를 權利發生順序에 따라
體制整備에 重點을 두고 改正 되었다.

III. 主要 改正內容

1. 特許保護對象의 擴大

가. 植物特許對象의 擴大(第31條)

舊法下에서는 植物發明 중 有性的 反復生殖植物과 無性的 反復生殖植物 중 塊莖·塊根·球根에 대하여 不特性의 對象으로 規定하고 있었으나, 改正法은 이중 無性的植物 중 괴경·괴근·구근 식물에 대해서는 特許를 許與하도록 改正하였다.

이는 괴경·괴근 등의 對象植物이 주로 감자나 고구마로서 우리국민의 主食의 一種이므로, 公益的見地에서 特許를 許與하지 않았으나, 오늘날 主食의 대상이 다변화되면서, 감자나 고구마의 신품종에 대해서 特許의 必要性이 要求됨에 따라 不特許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나. 飲食物·嗜好物의 發明(第32條)

改正法은 飲食物·기호물의 物質發明에 대해서도 不特許對象에서 除外함으로써 特許對象範圍를 擴大하였다.

음식물이나 기호물은 국민의 日常生活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新物質에 대해서 特許를 認定하는 경우에는 그 價格이 不當하게 높아져서 國民의 日常生活이 위협을 받을 憂慮가 있기 때문에 舊法은 이를 不特許對象으로 하고 있었으나, 다른 物質發明에 대해서는 모두 特許의 對象으로開放하면서 음식물과 기호물의 新物質에 대해서만 不特許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特許制度의 目的에違背될 뿐아니라, 西歐先進諸國의 食生活文化가 우리와 差異가 있으므로 先進國의 新飲食物質에 대

하여 特許를 許與하여도 國民大眾이 받을 不利益이 크지 않다는 點과 特質特許與國家中 不特許對象으로 하는 국가가 없다는 點을 감안하여 特許制度의 先進化를 위하여 改正法은 이를 特許의 對象으로 許與하게 되었다.

2. 發明者 등의 權益保護強化

가. 國內優先權制度新設(第55條)

本制度는 改正法에 새로이 導入된 制度로서 既存의 優先權制度인 外國出願을 基礎로 한 條約에 의한 優先權制度와 그 制度의 趣旨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條約에 의한 優先權(外國出願을 基準으로 함)과 區別하기 위하여 國內優先權制度라 한다.

國內우선권制度란 基本發明을 出願한 出願인이 그后 基本發明에 대하여 改良發明이나 利用發明을 한 경우에 兩發明을 包含하여 하나의 特許를 取得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發明者 및 出願인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이다.

즉 舊制度下에서는 出願后 基本發明에 대한 改良發明이나 利用發明을 한 경우에 그 改良·利用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別個의 出願을 하여야 하나, 改正法下에서는 國내에서 正規出願을 한 者가 그 선출 원한 날로부터 1年이내에 改良·利用發明을 한 때에는 先發明과 后發明을 一體로 하여 出願하는 경우, 后出願은 先出願時に 出願한 것으로 보는 소급화가 發生되는 制度이다. 이 경우 소급화가 認定되는 部分은 先出願에 記載되어 있는 發明에 限한다.

다만, 基本發明(先出願)과 改良發明(后出願)을 하나의 權利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特許權設定后的 權利行使에 適正을 期할 수 있고, 發明者의 發明意慾을 고취함으로써, 特許制度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다.

나. 補正却下制度 및 補正却下不服 抗告審判制度新設(第51條, 第169條)

舊法下에서는 出願人이 提出한 出願書의 發明內容을 訂正·補正하기 위하여 補正書를 提出한 경우에 그 補正이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한 發明을 擴張하거나 變更하여 要旨變更

으로 審查官으로부터 通知를 받은 경우에는 그 要旨變更判斷의 適否에 대하여 不服을 다룰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出願人에게 不測의 損害를 줄 우려가 있었으나, 改正法은 이를 是正하여 出願人の 補正이 審查官에 의하여 要旨變更으로 判斷된 경우에는 審查官은 同補正書를 却下處分하고, 同却下處分에 대하여不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도록 別途의 節次를 認定함으로써 審查官의 誤判으로 因한 出願人の 不利益處分을 是正하기 위하여 新設된 制度이다.

다. 特許權의 公用 · 収用制度 改善(第106條)

舊法下에서는 國防上과 公益上 必要한 때에는 政府에서 強制로 當該 特許權을 収用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을 改正法은 強制로 収用조치 할 수 있는 경우는 國防上 必要한 경우에 限定하고, 公益上 必要한 경우는 裁定에 의한 強制實施權의 對象으로만 함으로써 特許權者の 權益이 한층 신장되도록 하였다.

라. 特許權의 一部拋棄制度 新設(第215條)

舊法下에서는 特許權의 權利를 拋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權利全體에 대해서 拋棄하는 경우에만 認定되었으나, 改正法은 一部拋棄制度를 신설하여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되어 있는 項을 基準으로 項마다 拋棄를 인정함으로써 權利維持 및 行使 등에 伸縮性을 期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損害額 算定規定 新設(第128條)

舊法下에서는 特許權者の 權利가 侵害된 경우, 相對方으로부터 어느정도의 損害額을 賠償 받을 수 있는지의 與否에 대하여 具體的인 規定이 없어 判例에 依存하였으나, 改正法은 特許權者の 侵害에 따른 損害賠償을 請求함에 있어 그 基準額을 侵害者가 侵害行爲에 의하여 얻은 利益額을 特許權者の 損害額으로 推定할 수 있도록하고, 同利益額을 推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實施料相當額을 損害額으로 請求하거나 損害額이 實施料相當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에 대해서도 賠償청구할 수 있도록 明文化함으로써, 特許權者の 權利保護가 伸張되도록 하였다.

바. 特許權 存續期間 延長制度 改善(第89條, 第90條, 第91條, 第92條)

舊法下의 存續期間延長制度는 申請에 의한 承認方式으로 行政處分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나, 改正法은 이를 出願에 의한 審查方式으로 轉換하여 公象審查에 의한 公正性을 確保하고, 이에 대하여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拒絕查定不服抗告審判과 無効審判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延長制度를合理的으로 運營되도록 하였다.

사. 직권거절사정제도 改善(第73條)

舊法下에서는 特허사정후 特허권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때는 언제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 할 수 있던 것을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는 추후 무효심판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特허사정전까지만 직권거절사정이 가능토록하여 행정처분후 안정성과 特허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출원인의 권리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였다.

3. 國際化에 따른 制度 정비

가. 國際豫備審查制度의 採擇(第201條, 第205條)

8. 8. 10 特許協力條約加入時 同條約 第2章을 留保하여 第2章에 規定된 國際豫備審查制度를 利用하지 않았던 것을 同條約 第2章의 留保措置를 撤回함으로써,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의 경우에 우리나라도 國際豫備審查制度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必要事項을 先行立法조치 하였다.

이는 產業財產權制度의 國際化 · 統一化추세에 맞추어 特許協力條約 加盟國間에 모두 利用하고 있는 國際豫備審查制度를 우리나라도 利用하도록 함으로써, 先進審查機關에서 審查된豫備審查結果를 我國審查에 活用하여 審查의 質을 높이고, 審查官의 審查負擔을 輕減시키고자하는 것이다.

나. 無効審判의 除斥期間制度 削除(舊法第98條)

舊法下에서는 特許權 無効事由中 外國刊行

物記載에 의한公知를理由로 하여特許權無効審判을提起하는경우에特許權設定登録日로부터5年이經過한后에는無効審判을請求할수없도록되어있던除斥期間에관한규정을削除하였다.이는無効事由를안고있는特許權에대해서는언제나無效審判請求를認定함으로써,先進諸國의立法경향과特許制度의目的에合致하고자하기위함이다.

다.條約우선권主張證明書提出期間延長(第54條)

舊法下에서는外國출원을우선권主張의基礎로하여우리나라에條約우선권주장出願을하는경우에우선기간의초과與否에관계없이우선권主張수반출원(후출원)일로부터3月내에제출토록되어있던것을최선출원일로부터1년4월내에제출토록하여우선권제도이용출원인의편의를도모하도록하였다.

이는PCT제도하의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과보조를같이하기위한것이다.

4.其他改正事項

가.特許權存續期間制度改善(第58條)

舊法上의特許權存續期間은出願公告日로부터15年으로만되어있어,審查가지연되어公告되는경우에는存續期間이出願日로부터20년이超過될수있는矛盾을是正하여改正法은出願日로부터20년을超過할수없다는但書規定을新設하여,特許權의存續期間은最長出願日로부터20년을초과할수없도록制限하여公益의增進을圖謀하였다.

나.祕密特許制度改善

舊法下에서는國防上祕密을要하는出願에대하여는公用또는公告節次없이特許査定할수있도록만되어있어祕密特許의管理가一部未洽한點이있었으나,改正法은國防上祕密을要하는出願에대하여는外國에의出願을제한하거나,祕密取扱을命하여祕密을維持하도록하는規定으로補完하였다.이는國防上祕密로取扱되어야할發明이自由로이外國에出願되거나公開되는경우에는祕密이保障되지아니하므로,이에대한祕密을維持토록하

여國益을圖謀하기위한것이다.

다.심판참가제도개선(제155조)

舊法下에서는이해관계를가진자는심판에참가할수있도록만되어있어참가제도가명문화되어있지않던것을개정법은이를보다구체화하여심판에참가할수있는참가인의범위를명시하고당사자참가인에대하여는심판청구인이심판청구를취하한후에도청구인의지위에서심판을진행할수있도록하여불필요한심판청구의남발과심판절차의원활을기하도록하였다.

라.要約書提出制度新設(第42條)

改正法은기술정보자료이용의便宜圖謀및特許資料의電算化를위하여出願時發明內容을要約한要約書를提出하도록新設하였다.

5.法體制整備

舊法은그構成이不規則的으로配列되어있어一般國民이利用하는데어려움이있어,이를總則,出願,特許權,審判등의順으로特許出願에서消滅까지順次的節次에따라配列하고不適切한用語를整備하여舊法9章167條體制를12章232條體制로누구나알기쉽게一目요연하게정비하였다.

IV.맺는말

금번施行(90.9.1)되는改正特許法은2年余에걸친長期間과100余名에달하는大規模專門人力이參加한改正作業으로이루어졌다.

비록法은改正形式으로取해졌으나,新法의制定과같은어려움과陣痛을겪은產苦의結實이라고생각된다.

이제우리의特許法도先進工業諸國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는現代化된法令體制를갖추었으며發明者와出願인의權益이한층伸張되었을뿐아니라,特許制度를利用하는一般國民이理解하기쉽도록改正되었다는點에서相當한進展이었음을否定할수없다.

自由經濟原則下의企業은他企業과의경쟁에서우위를確保하기위해서는끊임없는技術開發에努力하지않으면안된다.그러나技術

開發에 뜻지않게 重要한 것은 開發된 技術의 獨占을 保障하는 特許制度의 認識提高와 効果의 利用 및 對應方策의 樹立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제는 制度改善에 따른 企業의 呼應과 技術開發의 分발이 要求된다고 생각된다. <♣>

改正 實用新案法의 主要內容

I. 法改正의 背景 및 方向

實用新案法의 對象이 되는 考案은 特許法의 對象이 되는 發明과 같이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思想을 對象으로 하는 점에서 같으나 다만 그 기술적 수준이 發明보다 低級한 水準의 창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中小企業의 育成이라는 產業政策的 見地에서 認定되는 制度이므로 그 法體制 또한 特許法의 體制를 그대로 準用하고 있어, 금번 改正法의 背景이나 方向도 特許法과 거의 같다 고 할 수 있다.

III. 主要 改正內容

1.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제도개선(제22조)

구법상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으로만 되어있어, 심사처리가 지연(심사청구의 지연이나 심사적체 등)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있는 모순을 시정하여 개정법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실

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익의 증진을 도모했다.

2. 무효심판의 제척기간 제도 삭제(구법 제26조)

구법하에서는 실용신안권의 무효사유중 외국에서 발표된 간행물기제에 의한 공지를 이유로 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이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효심판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선진제국의 입법경향과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에 합치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3. 기타 개정사항

- 국내우선권제도의 신설(제11조)
- 보정각하제도 및 보정각하 불복항고심판 제도 신설(제11조, 제35조)
- 실용신안하의 공용·수용제도 개선(제29조)
- 실용신안권의 일부포기 제도 신설(제147조)
- 손해액 산정규정 신설(제31조)
- 국제예비심사제도의 채택(제37조, 제45조)
- 비밀특허 제도개선(제11조)
- 법체제 정비에 대하여 특허법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신
간
내

변리사시험 대비
論 題
新 商 標 法

- 규격 : 국판350면
- 가격 : 7,000원
- 저자 : 김 관 형 <본회 조사부장>